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5년 12월15일(화) 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정책과장 천영길(044-203-4510), 사무관 이민호(044-203-4515)

# '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대폭 확대

**- '15년 210억, 654명에서 '16년 300억, 1,100여명 수준으로 1.5배 증액**

**- 연구참여인력 급여 현실화, 근무여건 개선 등 지원조건도 크게 개선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윤상직)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**'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'을 2015. 12. 15일 공고하고, 2016. 1. 1일부터 시행할 예정**이다.

□ 동 사업을 통해 '04년부터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해왔고, '15년에 654명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,000명의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했다.

○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,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업 **참여 전에 비해 평균 27.5%의 매출 증대**가 있었는데, 이는 중소기업 평균 4%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이며,

○ 사업참여를 통해 **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.86년 따라잡았으며, 사업화 건수도 평균 1.37건 증가**한 것으로 조사되어 **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혁신에 큰 도움을 준 것**으로 나타났다.



□ 특히, '16년부터는 산업부, 미래부*, 중기청**에 분산되어 있던 **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**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였고,

* 퇴직 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 사업(미래부) : 만 50세 이상의 대학·공공硏·대기업 연구소 퇴직자들의 중소기업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 ('15년 15억원, 70명)

** 초·중급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(중기청) :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이 중소기업 채용시 인건비 및 능력개발비를 지원 ('15년 60억원, 약 480명)

○ 이에 따라,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의 단일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, 중소기업이 여러부처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.

□ 산업부는 지금까지 기업과 인력이 겪어온 **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**하여, 기업과 인력 모두 만족스러운 사업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우선, '16년부터는 **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파격적으로 상향하여 (석사 2,700만원→4,000만원, 박사 3,300만원→5,000만원),**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의 제약요인이었던, **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**하였고,

○ 또한 **고경력(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) 연구인력**의 **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**하여 근무요건을 완화함으로써,

- 고경력 연구인력 취업의 문턱을 낮추어, 중소기업으로의 연구노하우 전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.

○ 출연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, **연구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제도를 도입**하여, 출연연 연구인력의 파견기피 요인이었던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하였다.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17 10:19:12

□ 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’은 ▲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, ▲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, ▲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기업은 필요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| 내역명 | 지원내용 | 예산 및 참여인력 |
|---|---|---|
| 공공 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| ·(지원대상)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(벤처기업 포함)<br>·(수행방식) 공공연 정규직 또는 기업지원연구직 파견<br>·(지원기간) 3년 이내(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)<br>·(지원내용) 지원인력 인건비 50% 지원 | 124.2억<br>217명 |
|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| ·(지원대상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보유 중소중견기업<br>·(수행방식)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3년 이내자 채용지원<br>·(지원기간) 최대 3년(1년 단위로 계속지원 평가) 지원<br>·(지원내용) 인력 인건비 50% 지원(석사 2,000만원, 박사 2,500만원) | 124.8억<br>760명 |
|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| ·(지원대상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보유 중소중견기업<br>·(수행방식) 연구경력 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자 채용지원<br>·(지원기간) 3년 이내<br>·(지원내용) 지원인력 인건비 50% 지원 (최대 5000만원/연) | 51.27억<br>165명 |
| 계 | | 300.27억<br>1,142명 |

□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“올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**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**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**애로사항을 해소**함으로써, 사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하고, “**기술혁신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합당한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작**된다“고 강조하였다.

□ 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 시스템(partner.nst.re.kr)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(www.rndjob.or.kr) 통해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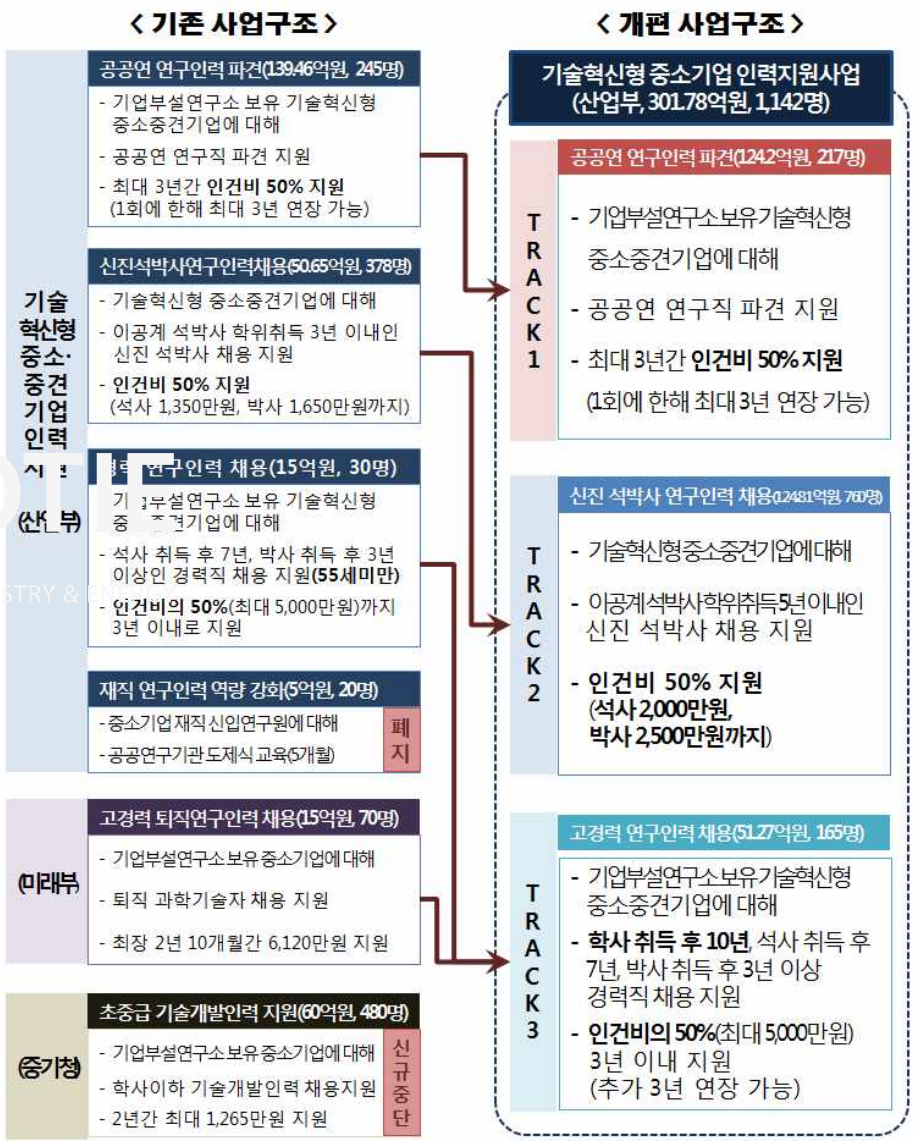
붙임 : 1. ‘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편안 요약 1부.
2.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분석 주요 성과 1부.
3. ‘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문 1부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이민호 사무관(☎ 044-203-45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붙임1** **‘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편안 요약**


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17 10:19:12

## 붙임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분석 주요 성과

□ 인력지원 내역

| 연도 |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파견지원 | 지원인원(명)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189 | 260 | 260 | 238 | 259 | 245 | 1,451 |
| | 지원기업(개)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131 | 201 | 215 | 209 | 239 | 245 | 1,240 |
| 채용지원 | 지원인원(명) | 711 | 423 | 534 | 430 | 793 | 1,097 | 1,100 | 863 | 828 | 733 | 523 | 408 | 8,443 |
| | 지원기업(개) | 598 | 352 | 473 | 389 | 699 | 966 | 1,013 | 814 | 776 | 690 | 491 | 408 | 7,669 |
| 합계 | 지원인원(명) | 711 | 423 | 534 | 430 | 793 | 1,097 | 1,289 | 1,123 | 1,088 | 971 | 782 | 653 | 9,894 |
| | 지원기업(개) | 598 | 352 | 473 | 389 | 699 | 966 | 1,144 | 1,015 | 991 | 899 | 730 | 653 | 8,909 |

□ **(경제적 성과)** 참여기업의 매출액, R&D 투자 증가 등 발생

| 구분 | '10년 | '11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업체당 매출증가율 | 44.9% | 24.2% | 28.0% | 6.5% | 33.9% | 27.5% |
| R&D투자증가율(%) | 68.6% | 34.0% | 49.4% | 31.5% | 30.9% | 42.9% |

* 매출증가율 = 사업참여 직후년도 매출액/사업참여 직전년도 매출액 - 1
* R&D투자증가율 = 사업참여직후 R&D/사업참여직전 R&D -1
* 자료 :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2015

□ **(기술적 성과)** 참여기업의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

| 구분 | '10년 | '11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술 수준 향상 정도(%) | 14.3 | 16.4 | 15.4 | 18.8 | 15.9 | 16.2 |
| 기술 격차 축소 정도(년) | 1.83 | 2.40 | 1.91 | 1.91 | 1.25 | 1.86 |
| 기술 개발 순증 건수(건) | 1.25 | 2.31 | 2.34 | 1.69 | 1.67 | 1.85 |
| 시제품 출시 순증 건수(건) | 1.08 | 6.31 | 2.23 | 2.35 | 1.25 | 2.64 |
| 사업화 건수 증가(건) | 1.13 | 1.56 | 1.79 | 1.05 | 1.33 | 1.37 |

* (세계최고대비)기술 수준 향상정도 = 사업 직후년도의 기술 수준 - 사업 직전년도의 기술 수준
* 기술 격차 축소 정도 = 사업참여 직후년도의 기술 격차 - 사업참여 직전년도의 기술 격차
* 기술 개발 순증 건수 = 참여 직후년도 개발 건수 - 참여 직전년도 개발 건수
* 사업화 건수 증가 = 직후년도 건수 - 직전 년도 건수
* 자료 :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2015

□ **(사업 만족도)** '10~'14년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6.25점(89.3%)으로 매우 만족

| 년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만족도 | 6.50 | 6.30 | 6.38 | 5.95 | 6.11 | 6.25 |

* 주 : ①전혀 만족 안함↔④보통임↔⑦매우 만족함, 7점 만점, 자료 : 참여기업 실태조사



## 붙임3 '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문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- 제2015-652호

###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

이공계 석·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공급·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, 「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2월 15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### 1. 사업목적

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·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

### 2. [illegible] 및 예산

○ 연구인력의 파견지원, 채용지원 등 3개 Track으로 운영

| 구분 | 과제명 | 2016년 예산규모 |
|---|---|---|
| Track1 |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| 301.78억원 이내 |
| Track2 |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 | |
| Track3 |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| |

* 트랙간 중복신청은 불가능
* 예산은 신규 지원 및 계속 지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

### 3. 관련법령 및 규정

□ **관련법령**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(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)

□ **공통규정**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17 10:19:12

## 4.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

◆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,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여 트랙별 별도 제시함

## 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(Track1)

### 가. 사업내용

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

#### □ 신청자격

○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·벤처기업·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(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)

- '기술혁신형 중소기업'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'기술혁신형 중소기업'
- '벤처기업' 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
- '중견기업'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에 따른 기업
- '창업지원기업' :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

#### □ 지원내용

○ 기업별 1명, 최대 3년 이내(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
- 석·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, 대학,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

○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% 정부지원

| 구분 | | 정부지원금 | 기업부담금 |
|---|---|---|---|
| 기업지원 최초 3년 | |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%지원 |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%지원 |
| 기업지원 연장 3년 | ① |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%지원 |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%지원 |
| | ② |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%지원 |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%지원 |

*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,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
*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
*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, 중식비,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,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

○ 지원인력 수행업무

-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



| 구분 | 업무내용 |
|---|---|
| 기술개발 |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, 기술개발 수행, 시험평가(성능, 규격, 내구성 시험 등) 등 |
| 기술기획 | 논문·특허 등 조사·분석, 기술예측, 기술개발과제 도출, 신상품 기획 등 |
| 기술관리 | 특허출원, 품질관리·인증, 기술영업,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,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|

### 나. 신청방법

#### □ 신청기간

○ 공고일 ~ '16.12.31.까지 상시 접수

#### □ 평가 및 선정절차

온라인 접수 ⇨ 사전검토 ⇨ 서면평가 ⇨ 현장평가 ⇨ 선정기업 통보

* 우대가점(총 10점) : 지방기업(5점), 여성기업, World Class 300지정 기업, ATC기업, 뿌리기업, 산업융합선도기업, 출연연 패밀리기업(이상 3점), 중소기업(2점)

#### □ 지원신청접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(partner.nst.re.kr) 공지사항 확인 → 회원가입 → 관련 신청서류* 작성 후 온라인접수

*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

### 다. 신청 제외 기준

○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

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

○ 기타 기준은 『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』 참조

### 라. 유의사항

○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,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'참여기업서약서(경업근무 동의서)'를 작성해야 함

○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

-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(지적재산권 등)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

-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,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

○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 통보 예정

○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

* 단,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(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,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)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17 10:19:12

## 마. 문의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☎(044)287-7386~7389, E-mail : partner@nst.re.kr

○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

※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예정이며,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(partner.nst.re.kr)를 참조하여 별도 사업신청 문의

# 2 신진 석 · 박사 연구인력 채용(Track2)

## 가. 사업내용

□ 이공계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(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)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

### □ 신청자격

**[지원인력]**

○ 이공계 석·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
*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·치의학,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

**[지원기업]**

○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(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)

- '중소기업'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기업
- '중견기업'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에 따른 기업 (다만,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)
- '창업지원기업' :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

### □ 지원내용

○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(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)+ 3년 추가 연장 가능

| 구 분 | 석사 | 박사 |
|---|---|---|
| 기준연봉 | 4,000만원 | 5,000만원 |
| **정부지원액/연** | **2,000만원(기준연봉대비 50%)** | **2,500만원(기준연봉대비 50%)** |

* 기준연봉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*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
*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'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

### □ 지원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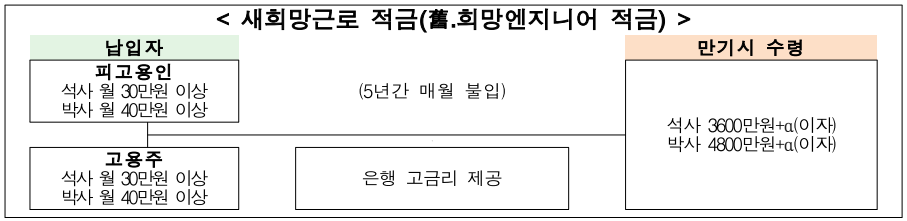
○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
○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

*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미보유기업의 경우,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
○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'새희망근로 적금(舊.희망엔지니어 적금)' 의무가입 및 유지

< 새희망근로 적금(舊.희망엔지니어 적금) >




*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,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(단, 귀책사유에 따라 상이함)
*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

## 나. 신청방법

### □ 신청기간

| 차수 | 신청기간 | 신청조건 |
|---|---|---|
| 1차 | '16.01.01.~'16.04.15. | '15. 9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인 인력 |
| 2차 | '16.04.16.~'16.07.15. | |
| 3차 | '16.07.16.~'16.10.15. | |

*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
* 협약시작일 : 1차(16년 6월 1일), 2차(16년 9월 1일), 3차(16년 12월 1일)

### □ 평가 및 선정절차

온라인 접수 ⇨ 서면평가 ⇨ 후보기업 통보 ⇨ 증빙서류 접수 ⇨ 선정기업 통보 ⇨ (채용예정자) 고용보험 가입 ⇨ 협약체결

* 우대가점 (기업 총 10점, 인력 총 3점) :
[기업] 지방기업(5점), 여성기업, World class300, ATC, 뿌리기업,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, 산업융합선도기업(3점), 중소기업(2점)
[인력] 대학·출연연·전문연 연구직, 여성(3점)

### □ 지원신청 접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(partner.nst.re.kr) 공지사항 확인 → 회원가입 →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

*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,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
*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

## 다. 신청 제외 기준

○ 기존 동 사업(Track2, Track3(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),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

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17 10:19:12

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(미래부), 초·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(중기청))으로 기지원 받은 자

○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

○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이중수혜 불가)

○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

○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
○ 기타 기준은『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』참조

### 라. 유의사항

○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# 마. 문의 및 접수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☎(044)287-7380, 7382~5 : partner@nst.re.kr

○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

##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(Track3)

### 가. 사업내용

□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

#### □ 신청자격

**[지원인력]**

○ 기업·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 자

*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,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

* 공공연구기관 :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

**[지원기업]**

○ 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(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)



▪ '중소기업'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▪ '중견기업'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에 따른 기업
(다만,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)
▪ '창업지원기업' :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

#### □ 지원내용

○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(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) + 3년 추가 연장 가능

* 3년 추가 연장은 '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

○ 지원인력 연봉의 50%(최대 5,000만원/연) 정부지원

#### □ 지원조건

○ '16.1.1~5.31.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배치·활용

*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미보유기업의 경우,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
### 나. 신청방법

#### □ 신청기간

| 신청기간 | 신청조건 |
|---|---|
| '16.3.2.(수)~'16.6.3.(금) | '16.1.1.~'16.5.31. 고경력 연구인력을 기간내 채용 |

#### □ 평가 및 선정절차

인력매칭 및 채용 ⇨ 신규지원 신청 및 (증빙)서류접수 ⇨ 서면평가 ⇨ 선정기업 통보

* 우대가점 (기업 총 10점, 인력 총 3점) :
[기업] 지방기업(5점), 여성기업, World class300, ATC, 뿌리기업,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, 산업융합선도기업(3점), 중소기업(2점)
[인력] 여성인력(3점)

#### □ 지원신청접수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(www.rndjob.or.kr) 공지사항 확인 →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→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(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,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)

### 다. 신청 제외 기준

○ 기존 동 사업(Track2, Track3(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),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(미래부), 초·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(중기청))으로 기지원 받은 자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17 10:19:12

○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

○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이중수혜 불가)

○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

○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
○ 기타 기준은『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』참조

### 라. 유의사항

○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# 마. 문의 및 접수처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☎(02) 3460-9083~5, E-mail : manpower@koita.or.kr

○ 서류 접수처 :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

## 5 (공통)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

○ 기업의 부도

○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○ 신청기업, 대표자,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
○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○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○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)

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

○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○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

## 6 기타사항

○ 제 1회 대한민국 연구인력 채용박람회 기간 중 매칭된 기업과 인력에 대해 Track2, Track3 지원시 우대

* 신규 지원 예정인원의 10% 이내 우선배정((Track2)신진 석박사 30人, (Track3)고경력 10人)

○ 지원인력은 산업기술 R&D 교육 기본과정 이수 의무(지원 후 6개월 내 수료)

○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M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17 10:19:12